

# 배합사료 제조규정에 대한해설

조 흥 래

(한국사료협회)

## 사료의 보세가공 배합범위와 분쇄도

농수산부에서는 1973년 2월 26일자로 배합사료의 보세가공 배합범위를 개정 시행키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였든바 일부에서는 이러한 사료의 배합범위 규정이 지나치게 수입육수수의 사용을 제한하고 또한 국내 사료의 이용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정하에서는 적절한 조처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 이도 있으므로 개정하게 된 경우와 필요성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 및 시행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 보고자 한다.

### 1. 보세가공 배합범위의 지정이 왜 필요한가

현재 배합사료는 관세법 제93조 제3항(특수보세공장)의 규정에 의거 내수용 보세공장으로서 관활세판장으로부터 배합사료 제조업에 대한 보세공장 설립특허를 받아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면세 규정을 적용하여 중요산업 용 원자재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사료가 반드시 배합사료로 가공되어야만 면세 통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관장은 수입원료를 어떤 범위내에서 배합하고 분쇄 가공하여야만 귀중한 의화로 수입된 사료가 수입목적에 전량이 효율적으로 공급되고 또한 국내 농산물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출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료의 보세가공 배합범위의 지정과 분쇄도(사료입자의 크기)를 규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입원료는 가축사료로 이용되는 것이므로 가축의 영양과 기호성 및 유출방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농수산부가 그 범위와 분쇄도를 정하여 관세청 당국에 통보하고 세관의 협조를 얻어 축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입사료에 대한 관세면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 2. 종래의 배합범위와 분쇄도

표 1 단위 %

| 구 분       | 양재사료         | 우돈사료         | 농축사료         | 단백질<br>기초사료  |
|-----------|--------------|--------------|--------------|--------------|
| 곡 류       | 36~72        | 20~60        | 55~65        |              |
| 강 류       | 0~35         | 20~70        |              |              |
| 식 물 성 박 류 | 5~25         | 5~15         | 20~30        | ) 2종 혼합      |
| 동 물 성 사료  | 0~15         | —            | —            |              |
| 기 타       | 3~15         | 3~15         | 7~12         |              |
| 계         | 100          | 100          | 100          | 100          |
| 분쇄도       | 15㎜ 이하<br>이상 | 15㎜ 이하<br>이상 | 20㎜ 이하<br>이상 | 20㎜ 이하<br>이상 |

※ 농축사료는 반드시 사용된 원료의 배합율을 표시할 것

이와 같은 사료의 보세가공 배합범위를 규정 시행하는데 이제까지 문제점이 되어온 것은 일부 사료제조업자는 전혀 국내산 곡류사료의 사용을 고려치 않고 곡류사료 배합범위의 상한선 까지 수입육수수를 사용판매함으로서 지나치게 곡류사료의 수입의존도를 높혔을뿐만 아니라 용

도 이외로 유품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왕왕 물의를 야기시키는 사례도 없지 않았으므로 정책 당국이나 사료업체에서도 수입 유효수의 사용제한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왔으며 또한 배합사료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정하에서 국내 사료자원의 개발 이용을 제도화하지 않는 수입위주로 사료공급을 계획할 경우 국내 의환사정이나 소용들이 치는 사료원료의 급격한 국제적 정세변동에 구애됨이 없이 과연 순조롭게 사료를 수입·총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불안감도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배합법위는 단순히 축종별로만 구분하고 생리적으로 영향학적 타성으로 보아 근본적인 차이

가 있는 어린가축과 성축을 같이 다루었기 때문에 유축과 성축을 공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배합법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였기 때문에 하등 배합법위를 규정한 의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 사료자원의 활용을 권장하기 위하여서도 동일 축종이라도 유축과 성축으로 구분하여 배합법위를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또한 사료별로 보면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곡류사료인데 이를 단순히 곡류사료만 규정하였으므로 일부 제조업자는 이를 기회로 수입유효수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곡류사료의 자급화 체고나 의화절약을 기한다는

### 3. 개정된 사료의 배합법위와 분쇄도

표 2

단위 : %

| 구 분  | 양 계 사 료   |         | 우 돈 사 료 |         | 농 축 사 료 | 단백질기초사료 |
|------|-----------|---------|---------|---------|---------|---------|
|      | 육추, 육계용   | 대추, 성계용 | 가축용     | 육성, 성축용 |         |         |
| 배합위기 | 곡 류       | 45~70   | 40~65   | 30~70   | 20~50   | 60~70   |
|      | 수 입 곡 류   | 60이하    | 56이하    | 59이하    | 30이하    | 60이하    |
|      | 강 류       | 0~35    | 5~40    | 10~40   | 30~70   |         |
|      | 식 물 성 박 류 | 3~25    | 3~20    | 3~20    | 3~10    | 20~30   |
|      | 동 물 성 사 료 | 1~15    | 1~15    | 1~15    | 0~15    | —       |
|      | 기 타       | 1~10    | 1~10    | 1~10    | 1~10    | 1~10    |
|      |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 분쇄도  | 15메쉬이상    | 15메쉬이상  | 20메쉬이상  | 20메쉬이상  | 20메쉬이상  | 20메쉬이상  |

#### ※ 개정요점

1. 양계사료를 육추 육계용 및 대추, 성계용으로, 우돈사료를 자축용 및 육성 성축용으로
2. 수입곡류의 최대법위를 신설

3. 곡류의 배합법위를 좁힘

4. 식물성박류 및 동물성 사료의 배합법위를 낮춤
5. 농축사료 배합법위를 조정

### 4. 사료의 배합법위 신구 대비표

표 3

단위 %

| 구 분       | 양 계 사 료 |                 | 우 돈 사 료         |       | 농 축 사 료  |                 | 개정(안) |  |
|-----------|---------|-----------------|-----------------|-------|----------|-----------------|-------|--|
|           | 현 행     | 개정(안)           |                 | 현 행   | 개정(안)    |                 |       |  |
|           |         | 육 추<br>육 계<br>용 | 대 추<br>성 계<br>용 |       | 자 축<br>용 | 육 성<br>성 축<br>용 |       |  |
| 곡 류       | 30~72   | 40~70           | 40~65           | 20~60 | 30~70    | 20~50           | 55~65 |  |
| 수 입 곡 류   | —       | 60이하            | 56이하            | —     | 59이하     | 30이하            | 60    |  |
| 강 류       | 0~35    | 0~35            | 5~40            | 20~70 | 10~40    | 30~70           |       |  |
| 식 물 성 박 류 | 5~25    | 3~25            | 3~20            | 5~15  | 3~20     | 3~10            | 20~30 |  |
| 동 물 성 사 료 | 0~15    | 1~15            | 1~15            | —     | 1~15     | 0~15            |       |  |
| 기 타       | 3~15    | 1~10            | 1~10            | 3~15  | 1~10     | 1~10            | 7~12  |  |
|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 개정사유표

1. 현행 배합범위는 그 폭이 너무 넓어 이를 가능한 범위로 좁혔음(특히 곡류)
2. 도입옥수수의 사용량을 규제하기 위하여 수입곡류의 상한선을 정했음
3. 강류의 사용을 원장하기 위하여 대추, 성계용 및 육성 성축용 사료에서 이의 상한선을 높혔음
4. 단백질사료의 결약을 위하여 박류 및 동물성사료의 범위를 조정하였음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농수산부에서는 개정사유로 들고 있다.

### 5. 수입옥수수 절약 가능량 추정

표 4

| 구 분                 | 육축 및 육계사료 | 대축성 계사료 | 계       |
|---------------------|-----------|---------|---------|
| '73년도 생산계획량(%)      | 236,000   | 464,000 | 700,000 |
| '72년도 각 공장 평균배합율(%) | 60.3      | 60.2    |         |
| 개정안 상한선 배합율(%)      | 60        | 56      |         |
| 현 배합율에 의한 사용량(%)    | 142,308   | 279,328 | 421,636 |
| 개정안에 의한 사용예상량(%)    | 141,600   | 259,840 | 401,440 |
| 개정안에 의한 예상절약량(%)    | 708       | 19,488  | 20,196  |

국가적 견지에서도 수입곡류의 배합범위를 신설한다는 것은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요인들이 농수산부로 하여금 사료의 보세가공 배합범위와 분쇄도의 개정을 촉구한 결정적 역할을 한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 6. 문제점

가. 현재 국내에산 곡류사료 가격이 수입옥수수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일뿐만 아니라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국산 곡류를 전혀 이용치 않고 사실상 수입옥수수만을 수입곡류의 배합범위 상한선 까지만 배합하게 되는 경향이므로 곡류의 배합율이 수입곡류의 배합범위이내에 머드르게 됨으로 저에너지사료가 될 염려가 있다.

#### 나. 배합사료가격의 통제

국내 사료원료의 가격인정요인을 배합사료

사정에 전혀 감안하지 않고 단지 수입사료의 양등요인만을 26.9% 범위내에서 인상 판매토록 억제하고 있는 현 실정하에서는 이와같은 개정이 오히려 배합사료의 원활한 생산과 품질의 저해를 갖어온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국내 사료자원의 활용 특수목적을 충족시켜줄 기타 사료의 배합범위를 양계 및 우돈사료에 있어서 종래의 15%에서 10%이하로 지난치기 제한한 결과 성계용 사료 및 기타 사료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라. 기업양축가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농축사료의 곡류 사료 배합범위를 65%에서 70%로 높인 대신 수입곡류의 배합범위를 65%에서 60%로 낮춤으로서 농축사료의 의의가 없어졌다.

마. 오늘의 배합사료생산은 정부의 저물가정책으로 억제되고 있어 아무리 값비싼 국내산 원료를 배합하여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였다 하여도 판매가격에 반영시킬 수 없는 한국적 현실때문에 농수산부가 목표하였든 국내 사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사료의 자급도 제고에 의한 수급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 7. 해결방안

첫째 배합사료가격의 현실적인 조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국내사료 자원의 활용도 증진이나 품질의 보장은 어려우므로 국산원료 가격을 사실 그대로 판매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국산 사료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기할 수 있도록 사료의 생산 및 이용체계를 제도화하고 생산 장려금을 정부가 보상하여 적정가격(수입가격선)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수입곡류를 제외한 기타 모든 사료원료는 사료이외로 유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폭을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넷째 사료원료의 국제적가격 폭등과 일부 품목의 품귀현상이 야기되고 있는 진박한 현 실정하에서는 양축가가 원료를 자체확보 활용할 수 있도록 농축사료 생산의 여지를 부여해야 한다.

다섯째. 가축의 영양적인 면에서 개정할 필요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문가와 협의하여 개정보완하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